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071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김선민 · 서미화 · 이해민  
김준형 · 서왕진 · 백선희  
이주희 · 신장식 · 정춘생  
강경숙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민원인(이하 “서비스이용자등”이라 한다)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폭언, 폭행 또는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를 가함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자등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요구

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br/>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br/>일부개정법률</p> <p><u>&lt;신 설&gt;</u></p> | <p>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br/>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br/>일부개정법률</p> <p><u>제3조의6(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br/>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br/>해 예방조치 등) ① 사회복지<br/>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br/>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br/>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또는<br/>민원인(이하 “서비스이용자등”<br/>이라 한다)이 사회복지사 등에<br/>대하여 폭언, 폭행 또는 그 밖<br/>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br/>·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br/>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를<br/>가함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등<br/>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br/>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br/>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br/>야 한다.</u></p> <p><u>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업<br/>무와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자등<br/>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u></p> |

지사 등에게 건강장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법인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  
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  
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  
지사 등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